

제273회 고령군의회 정례회  
제1 차 본회의, 2021.11.22(월)10:00

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 
검 토 보 고 서



전 문 위 원

# 「고령군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」 검토보고

## 1. 제 안 자 : 고령군수

## 2. 제안이유

- 지역주민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책을 접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식 정보의 습득 및 이용 격차를 해소하고, 평생교육의 장으로 지역 문화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운영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.

## 3. 주요내용

- 가. 작은도서관 지원 목적 및 정의, 군수의 책무(안 제1조 ~ 제3조)
- 나. 작은도서관의 기능(안 제4조)
- 다. 작은도서관 설치기준, 운영위원회 설치(안 제5조 ~ 제10조)
- 마. 운영인력, 운영시간, 휴관, 회원, 자료대출, 출입의 제한  
(안 제11조 ~ 제14조)
- 바. 자료의 이관 등(안 제15조)

## 4. 관계법령 : 「도서관법」, 「작은도서관 진흥법」

## 5. 검토의견

### ○ 본 제정조례안은,

- 지역주민들이 거주하는 가까운 곳에서 손쉽게 정보를 습득하고 문화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인 작은도서관을 운영 및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.

### ○ 검토결과,

- 안 제3조, 안 제5조 등에 명시된 군수의 책무에 관한 기준과 작은도서관 설치, 안 제9조, 안 제10조, 안 제11조 등 운영자의 직무와 운영시간, 운영방법에 대한 규정도 『도서관법』 및 『도서관법 시행령』 등에 부합되며,
- 공공도서관 수가 부족한 우리군 현실에서 지역주민들이 생활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, 지역주민들에게 일정한 문화공간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도 작은도서관에 대한 지원의 근거가 되는 본 조례(안)은 지역주민의 평생교육 의장으로써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.
-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